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30005605호

본 공고 내용 중 구매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제출 서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당초)

⑧ 해당 인증서(KS인증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KC인증서 등) 사본

-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은 KC마크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 ※ 세부품명별 인증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세부 품명	인증 및 기준	적용 규격
가. LED다운라이트	KS인증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중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에 적합한 제품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KSC 765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나. LED실내조명등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KSC 765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다. LED램프*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KSC 7651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KSC 765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라. LED보안등기구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C 765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마. LED가로등기구	KS인증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C 765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바. LED터널용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KSC 771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통상부고시 제2017-16호)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실외용등기구(LED보안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터널용등기구)는 MAS 표준규격서에 명기된 IP등급(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등급)이상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LED램프(39101699) 중 직광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 을 받은 제품으로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 (*) LED램프(39101699) 중 2018.4.1.부터 고효율기자재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컨버터내장형LED램프, 컨버터외장형LED램프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변경)

○ 제출 서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⑧ 해당 인증서(KS인증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KC인증서 등) 사본

- ※ 세부품명별 인증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세부 품명	인증 및 기준	적용 규격
가. LED다운라이트	KS인증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중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에 적합한 제품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KSC 765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나. LED실내조명등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KSC 765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다. LED램프*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KSC 7651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KSC 765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라. LED보안등기구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C 765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마. LED가로등기구	KS인증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C 765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바. LED터널용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KSC 771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통상부고시 제2017-16호)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실외용등기구(LED보안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터널용등기구)는 MAS 표준규격서에 명기된 IP등급(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등급)이상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과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
- ②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자료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 ※ (*) LED램프(39101699) 중 직광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 을 받은 제품으로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 (*) LED램프(39101699) 중 2018.4.1.부터 고효율기자재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컨버터내장형LED램프, 컨버터외장형LED램프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8-0164-00**
- 구매물품 및 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단위	구매예정수량
39111515	다운라이트설비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개	100,000
39112102	LED실내조명등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개	50,000
39101699	LED램프	3910169901	LED램프	개	50,000
39111603	도로조명설비	3911160302	LED가로등기구	개	5,000
		3911160304	LEDE터널용등기구	개	5,000
39111608	거주조명설비	3911160802	LED보안등기구	개	10,000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26년 4월 30일)일**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3월3일 ~ 4월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만,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명시된 제품 형태에 적합한 규격만 계약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입력'(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¹⁾(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표준규격서 및 붙임 규격서」를 참고하시어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인증번호, 재료, 시험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적용 제품은 반드시 규격서에 품목별로 【광효율, 정격광속, 초기광속, 광속유지율, 연색성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으로 *핵심부품, *주요부품1에 대해서 원산지를 규격서와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화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 규격서 파일 용량은 15M이하여야 합니다. (PDF활용)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제품>

연번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대상
18	39112102	LED 조명	핵심부품 : LED칩
80	3910169901	LED램프	핵심부품 : LED칩
81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핵심부품 : LED칩
82	3911160302	LED가로등기구	핵심부품 : LED칩 주요부품 : 하우징(몸체)
83	3911160304	LED터널용등기구	"
84	3911160802	LED보안등기구	"

* 주요부품 : 해당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

* 핵심부품 : 해당제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

- ⑧ 해당 인증서(KS인증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KC인증서 등) 사본
 -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은 KC마크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 ※ 세부품명별 인증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세부 품명	인증 및 기준	적용 규격
가. LED다운라이트	KS인증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은 제품중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에 적합한 제품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KSC 763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나. LED실내조명등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KSC 763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다. LED램프*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KSC 7651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KSC 765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라. LED보안등기구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C 765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마. LED가로등기구	KS인증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C 765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바. LED터널용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KSC 771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통상부고시 제2017-16호)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은 실외용등기구(LED보안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터널용등기구)는 MAS 표준규격서에 명기된 IP등급(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등급)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과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

②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자료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 (*) LED램프(39101699) 중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으로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 LED램프(39101699) 중 2018.4.1.부터 고효율기자재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컨버터내장형LED램프, 컨버터외장형LED램프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2015.06.29.)에 따라 최소 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품목에 대한 “KS인증”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기준이 “최소녹색기준”과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인 시험항목은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 LED램프

항목	5W이하	5W초과 10W이하	10W초과 15W이하	15W초과
광효율	75lm/W이상	80lm/W이상	80lm/W이상	85lm/W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80이상			

○ LED등기구

항목	10W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초과
광효율	80lm/W이상	90lm/W이상	95lm/W이상	95lm/W이상	95lm/W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80이상				

○ LED보안등기구

등기구효율	95lm/W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연색성	7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시험 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따라 ‘광속유지율’ 시험방법은 동 규정 ‘[부록]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 받기 위한 LED패키지 시험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당해 품목 광속유지율 기준 이상의 LED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마스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우06632)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팩스 : 070-4009-2214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가격자료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²⁾

2)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2-1,....) 명기
-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기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기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출 기 한 :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관련 서류)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9.0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FAX: 070-4009-2214
- ② **2차 제출서류** :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온라인 제출후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우편제출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 본청(조달청) 쇼핑물구매팀: (우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02호
-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06587)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6508)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금곡동 1010-6)
-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22333)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4 (신흥동 3가 7-225)
-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262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이곡동1301-1)
-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오룡동1110-13) 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35347)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도마동 359-1)
-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51439)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4456)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칠전동 645)
-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842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북대동 417)
-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54907)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인후동2가 1533)
-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 (우63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662) 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 >

지방조달청	관할구역
1. 서울지방조달청	가. 서울특별시 나. 그 밖에 다른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2. 부산지방조달청	가. 부산광역시 나. 울산광역시
3. 인천지방조달청	가. 인천광역시 나. 경기도 중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및 화성시
4. 대구지방조달청	가. 대구광역시 나. 경상북도
5. 광주지방조달청	가. 광주광역시 나. 전라남도
6. 대전지방조달청	가. 대전광역시 나. 충청남도
7. 강원지방조달청	강원도
8. 충북지방조달청	충청북도
9. 전북지방조달청	전라북도
10. 경남지방조달청	경상남도
11. 제주지방조달청	제주도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방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 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㉞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㉟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10**

-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15**
-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20**
-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25**

주) 총 제재기간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대한 총 제재기간 합계

- ㉤ 입찰참가자가 “㉞”와 “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LED램프 제외)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달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릅니다.
-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 ③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5- 31호, 2015. 11. 27.)
- ④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4호, 2015. 9. 21)
- ⑤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3호, 2015. 9. 21)
- ⑥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2015-89호 ,2015. 11. 27.)
- ⑦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6-22호, 2016. 2.16.)
- ⑧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구매총괄과-1198, 2015. 4. 14.)
- 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 고시 2016-08호,2016. 2. 16.)
- 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조달청고시 2016-09호, 2016. 2. 16.)
- ⑪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6. 24)
- ⑫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15-29호, 2015.10.19)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 ③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쇼핑물구매과 계약담당자 이재학 (☎ 070-4056-7291, FAX 0505-480-1476, 메일 주소 : hak2d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